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에 따라 추가·보완필요성이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어린이승하차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과목 변경(안 별표 16)

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28)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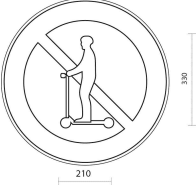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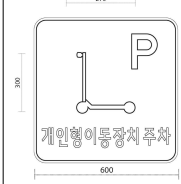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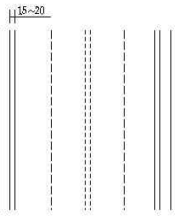
2) 입법예고, 4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6의 II. 개별기준 제2호나목 중 제205 다음에 제205의2 및 제206 다음에 제206의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제320 다음에 제320의2 및 제320조의3 및 제3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표의 제5호 중 제5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205의2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표 지		·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 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 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206의2	이륜자동차·원동기장 치자전거 및 개인 형이동장치통 행금지표지		이륜자동차·원동기장 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20의2	개인형이동장 치주차장표지		· 개인형이동장치주차 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이동장치주 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개인형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 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 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 치
320의3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 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 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 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20의4	어린이 승하차 표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 판에 표시된 시간동 안 주정차할 수 있도 록 지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 이의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 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 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516	정차·주차 금지 표시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 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 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 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 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 여 정 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 은 안전표지 설치
-----	-------------------	---	--------------------------------------	--

	은 사람	한 사람		▶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	지필검사·과제 작성·실습·상 답 등
--	------	------	--	--	---------------------------

별표 28 중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일련번호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정지기간
1	제93조 제1항 제18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0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경우에는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2. 위 표의 위반행위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II. 개별기준 제3호 나목 중 제320조의3 및 제3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 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음주 운전 교육	(1) 법 제73 조제2항 에 해당하 는 사람 중 음주운 전이 원인 이 되어 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	최근 5년 동 안 처음으 로 음주운 전을 한 사 람	12시간 (3회)	▶ 음주운전 위험요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강의·시청각· 발표·토의·영 화상영·진단 등
		최근 5년 동 안 2번 음주 운전을 한 사람	16시간 (4회)	▶ 음주운전 위험요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강의·시청각· 발표·토의·영 화상영·진단· 지필검사·과제 작성 등
		최근 5년 동 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48시간 (12회)	▶ 음주운전 위험요인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강의·시청각· 발표·토의·영 화상영·진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596